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8.
전부개정 2013. 7.
개정 2016. 3.
개정 2016. 8.
개정 2018. 3.
개정 2019. 3.
개정 2021. 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우송대학교 학칙 제6조,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4조의2에 의거 본 대학 계약학과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범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제2조제2호다목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2. “채용조건형”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교육형”이라 함은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기준 및 현황) ①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문의 분류상 전문적인 독립성, 학문의 성격, 교육조직 설치의 일반 관례, 사회적 수요 및 우송대학교의 교육목표·장기계획 등에 비추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②계약학과 설치의 새로운 학과 설치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할 수 있다.

③계약학과 학위과정명, 학위과정 입학정원, 수여학위 등의 현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설치·운영 기간) 계약학과 설치 운영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편입과정은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계약 대상 기관) 이 규정에 따라 본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포함)이상인 사업체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제6조(운영계약) 계약학과와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와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퇴직·인사이동 또는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생의 신분 및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7조(계약학과와 설치위치) ①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②산업체등 소유시설과, 타 기업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의 시설 이용은 무상으로 한다.

제8조(공동계약 및 3자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운영) ①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채용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입학자격) ①계약학과 등에 지원하는 자는 우송대학교 학칙 및 우송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산업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2. 석사학위과정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 박사학위과정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4. 재교육형 계약학과와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
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제5조의 3자계약에 의해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9개월미만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②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 중 선발하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학생

모집·선발 시, 산업체가 희망할 경우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한다.

③제2항의 추천서에는 입학하려는 자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 영수증(신규 입학의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을 첨부하고, 산업체(사업장)의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학생선발 방법에 관한 사항) ①계약학과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및 다음에 의한다. 다만,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
2. 필답고사
3. 면접고사
4. 신체검사
5. 실무경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해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 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③학습구분은 주간과정, 야간과정 등으로 구분하고, 편입학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편입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대 3년제 과정 졸업자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4학년 편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3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2. 4학년 편입의 경우 이전 대학에서 3학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
3. 법에 의하여 제1호 또는 2호의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채용조건형 계약학과입학의 경우 제 2항에 따라 산업체등은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 조건은 협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

제11조(입학정원) ①계약학과등의 학생 선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03.14.)

②계약학과입학정원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에 상호 계약한 인원수로 한다.(개정 2019.03.14.)

③계약학과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학년별 학생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입학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03.14.)

④계약학과 학생의 입학정원은 교원확보율 등 학과(부)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①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5조의 공동 계약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제2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학생 1인당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③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되,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한다.

④산업체 부담금은 산업체로부터 직접 납부 받아야 하며, 학생은 본인 부담금 외의 금액을 대납할 수 없다.

제13조(학생부담수업료 등 납부금 및 현물부담금) ①계약학과입학의 운영경비는 계약 주체(산업체)에서 5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

한 경비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장학금 및 입학금 등은 계약 주체와 협의에 의하여 지급여부 및 방식을 정한다.

③기타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 ‘등록금 납부 규정’ 및 관계법에 의한다.

④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현물을 산업체등이 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의 일부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총 부담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퇴직 및 계약학과 폐지로 인한 학생보호) ①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주관학과(부)나 관련 학과(부)에서 맡도록 하되, 학생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②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의 도산, 구조 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계속되는 휴업(휴직)·사업장 이전·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했거나, 2분의 1미만 이수했을 때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⑤구조조정 등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는 퇴직 후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교육은 당해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제 3 장 계약학과 수업 및 학사운영

제15조(교과과정 운영원칙)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게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년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제16조(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출석수업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원격대학의 계약학과는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을 합한 비중이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대학 ‘학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겸임교원 등) 산업체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원 또는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할 수 있다.

제18조(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 특례) 계약학과 학생이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학과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학사관리 등) ①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시행령 등 교육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한다.

제20조(위원회) ①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주관학과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관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본교와 산업체등이 각각 2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위촉한다.

③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주관(모체)학과는 운영위원회 또는 산업체 관계자와의 워크숍 등을 통하여 매년 1회 이상 계약학과 교육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학위수여) ①계약학과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서 우송대학교 학칙에 따라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②우송대학교 대학원학칙에 따라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각각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되, 「대학원학위수여규정」에 따른다.

제22조(현황 제출 및 공시) 본 대학은 교육부에 계약학과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산업체 등의 현황과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제출해야하고, 협약서와 학칙 제개정 관련 자료를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학과 업무분장) ①각 부서별 업무 분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학과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기획처(학부), 대학원팀(대학원)
2. 학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 입학취업처, 대학원
3. 수업 및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교무처, 대학원
4. 운영경비 및 등록금에 관한 사항 : 총무처
5. 학생 장학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학생복지처, 대학원
6. 계약학과 설치 운영 계획 보고 및 세부 운영 사항 : 계약학과 주관 학과

②전항 각호에 대한 운영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보 칙

제24조(준용규정 등) ①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 「학칙」 및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②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적용의 특례)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개정 2016.8.29.><개정 2018.03.09.><개정 2019.03.14.><개정 2021.03.08>

계약학과 학위과정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명 등

계약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학위명	모체학과
철도융합대학원	철도공학과	석사	60	공학석사	철도건설시스템학과
일반대학원	철도공학과	박사	30	공학박사	철도시스템학과

[별지 1. 서식] <전부개정 2016.3.1>

계약학과 신설신청서

1. 계약학과 개요

계약학과명 (모체학과명)	유형	입학정원	계약기간	학위명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명	-	예) 경영학사, 공학석사

2. 계약유형

단독계약	공동계약	제3자 계약
1개 업체와 계약	2개 이상의 업체와 계약	사업주 단체와 계약, 국가·지자체등 재정지원 시

3. 계약기업정보 (기업체가 복수일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기업명		대표자성명	
주 소			
주업종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4. 관리학과 및 운영부서

학사관리기관			행정지원부서	
계열/대학(원)	학부(과)	학부(과)장	부서명	담당자 (내선번호)

5. 산업체 부담사항

항 목	학생 소요경비 부담방법			
	산업체 부담금 (비율)	외부기관 지원 (비율)	대학 장학금 일괄감면 (비율)	학생 부담비율
입학금	(%)	지원기관명 : (%)	(%)	(%)
수업료				

6. 수업의 운영(안)

예시) - 출석수업 %, 현장실습수업 %, 원격수업 % 등

7. 학생선발 기준

예시 - 필답고사, 면접고사, 실무경력 등

8. 학과 운영계획

가. 학과신설의 필요성

- 융합성, 시급성, 미래지향성, 차별성, 대학발전과의 연계성 등

나. 학생 충원 가능성

- 매년 충원 가능성 여부, 우수 학생 충원 계획 등

다. 교과과정의 충실성 및 학과 운영 능력

- 대학의 이론 교육과 현장경력의 상호 보완
- 참여 교수의 적절성, 전용공간(강의실 등) 및 전담인력 확보의 적절성
- 예산 구성의 운용계획의 타당성

라. 협약기관의 우수성 등

- 협약기관 설명자료
- 참여 기업과 실질적 산학협력 추진 전략 등

【계약학과 설치 신청】

계약학과를 설치하려는 학과(부)는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일 3주전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첨부할 서류

- 가. 계약학과 운영계약서 초안 1부 [별지서식 4, 5 참조]
- 나. 교육과정 운영(안) 1부
- 다. 운영위원회 편성(안) 1부
- 라. 회사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2. 서식] <신설 2016.3.1>

계약학과 폐지신청서

1. 계약학과 개요

계약학과명 (모체학과명)	유형	설치일자	학위명
	(재교육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최초설치일자	예) 경영학사, 공학석사

2. 계약유형

단독계약	공동계약	제3자 계약
1개 업체와 계약	2개 이상의 업체와 계약	사업주 단체와 계약, 국가·지자체등 재정지원 시

3. 계약기업정보 (기업체가 복수일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기업명		대표자성명	
주 소			
주업종		홈페이지	
담당자		전화번호	

4. 관리학과 및 운영부서

학사관리기관		
계열/대학(원)	학부(과)	학부(과)장

5. 미졸업 학생현황

현(現) 재학생 수	현(現) 휴학생 수	현(現) 수료생 수	합 계

※ 제적생을 제외한 미졸업 인원이 있을 시, 계약학과 폐지신청 불가.

위와 같이 본 계약학과의 운영이 종료하여 당해 학과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OOO) 계약학과 운영위원장 OOO (서명)

우송대학교 총장 귀하

【계약학과 설치 신청】
계약학과를 폐지하려는 학과(부)는 심의기간을 고려하여 폐지 3주전까지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3. 서식] <신설 2016.3.1>

우송대학교와 (OOO)의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안)

우송대학교와 (OOO)는 연구 및 교육의 상호 협력을 위한 산학협약의 정신에 따라 OO분야의 우수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교육 교육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우송대학교에 계약학과로 'OO학과(전공)'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할 것을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우송대학교 총장(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OOO회사 (이하 "산업체"라 한다) 상호간에 인력 및 시설을 공동으로 연계 활용하여 산업계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함으로써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대학"과 "산업체"는 본 협약의 내용에 대해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협력분야)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의한다.

1. "대학"은 "산업체"의 수요에 의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산업체"는 소속 직원이 "대학"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3. "대학"과 "산업체"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제4조(비밀유지) "대학"과 "산업체"는 본 협약의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효력) 본 협약은 양 당사자 간의 공동정신을 표명한 것으로서, 양 당사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운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년 월 일

우 송 대 학 교

○ ○ ○ ○ ○ ○ ○ ○

총 장 존 엔 디 컷 (인)

대 표 ○ ○ ○ (인)

[별지 4. 서식] <전면개정>

【재교육형】 - 단독계약서식

우송대학교와 “산업체”명 간의 계약학과 (학사·석사·박사)과정 설치·운영 표준계약서

우송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회사명: _____(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OOO대학(원) OOO학과(부)	주간(야간)	학위과정명	수여학위명	OO	최초 입학자 입학일 - 최종 입학자 졸업일	교내(교외)

제 3 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9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이하 “학생”이라 한다)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 4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운영위원회 구성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위원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 5 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 6 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7 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 출결사항, 성적 등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 8 조(경비 부담) ①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학생”이 각각 납부한다.

②“산업체”와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00%

2. 학생 분담비율 : 00%

③“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④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약'에 따라 학생이 제 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② "산업체"는 "학생"이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제 10 조(산업체 시설사용) ①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제 11 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 제 12 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지침 등을 적용한다.
-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 제 14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우송대학교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총 장 존 엔디컷 (인)

업체명 _____

주 소 _____

대표자 _____ (직인)

[별지 5. 서식] <전면개정>

【재교육형】 - 3자계약서식

우송대학교와 “기관명”과 “산업체명” 간의 계약학과 (학사·석사·박사)과정 설치·운영 표준계약서

우송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기관명: _____(이하 “기관”이라 한다) 와 회사명: _____(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와 “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관” 및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OOO대학(원) OOO학과(부)	주간(야간)	학위과정명	수여학위명	OO	최초 입학자 입학일 - 최종 입학자 졸업일	교내(교외)

제 3 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9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이하 “학생”이라 한다)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할 허가한다.

제 4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①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기관”과 “산업체”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②운영위원회 구성은 “기관”과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위원 1/3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 5 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 6 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7 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출결사항, 성적 등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 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 8 조(경비 부담) ①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학생”이 각각 납부한다.

②“산업체”와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부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부담비율 : 00%

2. 학생 부담비율 : 00%

③“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④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인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약'에 따라 학생이 제 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② "산업체"는 "학생"이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 10 조(산업체 시설사용) ①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기관" 및 "산업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체"가 "기관" 및 "산업체"의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기관" 및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1 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 12 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제 14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기관" 및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우 송 대 학 교

000기관단체

000산업체

총장 존 엔 디 컷 (인)

대표 000 (인)

대표 000 (인)

[계약서예시 별표1]

00계약학과 운영위원명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00학과장 000 교수	
운영위원 000 교수	운영위원 0000산업체 000대표
운영위원 000 연구원	운영위원 0000산업체 000총무과장